

한국IR대상 선정기준

2018. 8

한국IR협의회

한국IR대상 선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IR협의회(이하 “IR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조에 의한 IR우수기업의 발굴 및 표창을 위하여 IR협회가 제정한 한국IR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IR대상) ①IR협회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IR활동을 통해 기업과 주주 및 투자자의 공동이익과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IR우수기업 및 당해 임직원 등을 선정하여 한국IR대상을 시상한다.

②한국IR대상의 시상 부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기업상

가. 대상(1개사)

나. 최우수상(1개사)

다. 우수상(2개사)

2. 개인상(베스트 IRO상 : 임원 1명, 직원 1명)

③IR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업을 포함하여 시장별 IR우수기업군을 선정·발표할 수 있다.

④필요한 경우 상장기업의 IR활성화와 건전한 IR문화 정립에 헌신한 공로자를 추천받아 공로상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3조(한국IR대상선정위원회) ①IR협회는 한국IR대상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IR대상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선정위원회는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IR협회 회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④선정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4조(선정시기 및 심사대상기간) ①IR협의회는 매년 9월(이하 “선정월”이라고 한다)에 한국IR대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다만, 선정일정 등을 고려하여 IR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한국IR대상 심사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 말까지로 한다.

제4조의2(선정대상)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상장법인 또는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수상자 선정절차) ①기업상(IR우수기업군 포함) 수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1차 평가(후보 추천서 접수 및 평가대상회사 선정)

가.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의 추천기업으로서 시장별로 추천빈도수가 높은 기업

나. 증권유관기관 추천 및 상장법인 자기 추천 기업으로서 시장별로 IR협의회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2. 2차 평가(기관투자자 평가단에 의한 평가) :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의 리서치센터장 및 주식운용본부장 등으로 2차 평가를 위한 기관투자자 평가단을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2차 평가 대상회사의 IR활동에 대한 평가실시(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에 의한다)

3. 3차 평가(심사 및 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1차 및 2차 평가결과와 IR활동평가모형 적용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

②개인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1차 평가(후보 추천서 접수 및 평가대상 IRO 선정)

가.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시장별로 추천빈도수가 높은 자

나. 증권유관기관 추천 및 상장법인이 추천한 자로서 시장별로 IR협회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2. 2차 평가(기관투자자 평가단에 의한 평가) :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관투자자 평가단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IR활동 및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에 의한다)

3. 3차 평가(심사 및 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1차 및 2차 평가내용을 토대로 심사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

③공로상 수상자는 IR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가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수상 제한) ①당해 심사대상기간 초일 이전 1년부터 선정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을 제한한다.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2.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3.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의하여 상장폐지기준 또는 관리종목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법, 부당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선정위원회가 수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2조 제2항에 의한 대상의 경우 동일 기업에 대한 연속 시상은 3년까지 허용한다.

③베스트 IRO상은 동일인에 대해서는 1회만 시상한다.

제7조(후보자의 실사 등) IR협회는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에게 관련사항에 대하여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시상) ①IR협회는 선정위원회에서 수상자가 선정되면 1개월 이내에 시상을 한다.

②IR협의회는 기업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개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③IR협의회는 시장별로 선정된 IR우수기업군을 공표한다.

제9조(선정 취소)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IR협의회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기업부문 2차 평가항목 및 배점

대항목	세부항목	배점
CEO의 IR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 성실성과 신뢰감	20
	· IR활동 참여도	
	· 주주중시경영의 실천 정도	
	· CEO에 대한 평판	
IR담당 임직원의 자세	· IR담당 임직원의 전문성 정도	20
	· 성실성, 신뢰감	
	·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보제공	
	· 투자자 직접 방문 등 능동적 자세	
IR Tool 및 활동의 다양성	· IR활동의 양적 수준	20
	· IR활동의 질적 수준	
	· IR Tool의 다양성	
	· IR활동의 지속성 및 일관성	
제공 정보의 공평성·신뢰도·유용성	· 제공 정보의 충실도	20
	· 제공 정보의 신뢰도	
	· 정보 제공의 공평성	
	· 제공정보의 투자에 대한 유용성 정도	
사이버 IR의 활용성	· 홈페이지 제공 정보의 다양성	20
	· 정보 접근의 용이성	
	· 제공 정보의 활용성	
	·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신속성 및 적극성	

<별표2>

개인부문 2차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공정성	공평한 IR정보 제공	20
전문성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식견	20
적극성	신속한 정보제공과 피드백	20
커뮤니케이션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투자자 관계	20
의견청취 노력	증권시장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	20